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해사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, 시험실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등 규정(안 제20조의2, 안 제20조의3, 안 제20조의4, 별표4의3, 별표4의4, 별표4의5)

선박안전관리사 제도도입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, 자격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자격기준, 시험과목, 합격기준,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

나. 권한의 위임 및 위탁(안 제21조)

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고자 함

다.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규정(안 제21조의2)

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30. ~ 2022.10.30.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실시 예정

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으로 하고,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선박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등)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”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기준을 말한다.

② 법 제61조의2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선박직원법」 또는 「선원의 훈련·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기사
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

제20조의3(시험과목 및 합격기준) ① 법 제61조의2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(이하 “자격시험”이라 한다)은 별표 4의4와 같이 등급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② 필기시험의 과목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.

③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,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

1. 필기시험: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

2. 면접시험: 60점 이상인 사람

④ 2급 이상의 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사람이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제20조의4(시험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) ① 자격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, 시험 과목,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, 시험일시·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자격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.

1.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

2. 대학에서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

3.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

4.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

5. 선박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경력증명을 위한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가 합격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.

⑦ 그 밖에 자격시험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이 정한다.

제2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.

1.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실시

2.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공고

3.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

4.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합격자 공고

5.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

제21조의2 중 “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신청

2.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면제 대상자 확인

3. 법 제61조의2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

4. 법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

5. 법 제61조의5에 따른 자격의 취소·정지

별표 4의3부터 별표 4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5 제2호노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도목부터 쿠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노. 법 제6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10조 제5항제2호	50
---	-------------------	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준비행위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

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0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을 미리 실시하고,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,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영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.

[별표 4의3]

선박안전관리사 시험 등급 및 응시자격(제20조의2 관련)

선박안전관리사 등급	응시자격
1급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선박안전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보유한 사람 2. 2급 이상 해기사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보유한 사람
2급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 선박안전관리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보유한 사람 2. 3급 이상 해기사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보유한 사람
3급	제한 없음

비고

1. 현장경력에는 승선경력을 포함하며, 현장경력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.
2. 해기사 면허가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된다.

[별표 4의4]

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시험의 방식

등급	필기	면접
1급	객관식 4지 택일형 및 주관식	구술형
2급	객관식 4지 택일형	구술형
3급	객관식 4지 택일형	—

[별표 4의5]

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

시험과목	목표	내용 구성
선박관계법규	해사안전관리 및 해양환경 보호 관련 법령과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	국내법 8종, 국제협약 6종 - (국내법) 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, ②선원법, ③선박직원법, ④선박안전법, ⑤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, ⑥해운법, ⑦해사안전법, ⑧국제선박항만보안법 - (국제협약) ①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(SOLAS), ②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(MARPOL), ③선원의 훈련,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(STCW), ④국제 만재할수선 협약(Load line), ⑤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협약(Tonnage), ⑥해사노동협약(MLC)
해사안전관리론	사고예방 기법, 사고관리 기법, 사고대응 절차,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능력 함양	정부의 대표적인 사고예방 기법인 항만국 통제제도 및 해사안전감독, 안전관리·비상대응 절차, 해양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, 해양관할권 및 항행권과 관련한 내용
해사안전경영론	안전경영정책 목표, 책임, 조직, 절차 수립·운영,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경영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한 능력을 함양	안전에 대한 법적책임, 안전정보의 확인, 안전경영정책의 수립·계획·측정·검사, 안전조직 구성·운영, 안전경영정책 환류와 관련한 내용
선박자원관리론	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항해를 위해 선박의 인적 및 물적자원관리,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, 선교 및 기관실 자원관리에 대한 이해	인적자원관리, 과업 및 업무량 관리 적용 능력, 의사소통, 의사결정기술, 선박기기, 선박구조, 선박관리시스템
선택과목	-	‘항해’ (해기사 시험과목 중 ‘항해’와 ‘상선전문’ 과목) ‘기관’ (해기사 시험과목 중 ‘기관(1)’

		과 ‘직무일반’ 과목) ‘산업안전관리’ (산업안전관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관련법령, 안전 및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) 중 택일
--	--	--

비고

1. 「선박직원법」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자는 선택과목 중 ‘항해’ 또는 ‘기관’에 해당하는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면제대상 과목은 해기사 면허 취득시 응시하였던 시험과목에 한정한다.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선택과목 중 ‘산업안전관리’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.
3. 시험과목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20조의2(선박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등) ① 법 제61조의2 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”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기준을 말한다.</u> <u>② 법 제61조의2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 <u>1. 「선박직원법」 또는 「선원의 훈련,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」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</u> <u>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기사</u> <u>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</u>		
<u><신 설></u>		<u>제20조의3(시험과목 및 합격기준)</u> <u>① 법 제61조의2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(이하 “자격시험”이라 한다)은 별표 4의4와 같이 등급에 따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</u>		

<신 설>

시한다.

② 필기시험의 과목 및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기준은 별표 4의5와 같다.

③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,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.

1. 필기시험: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

2. 면접시험: 60점 이상인 사람

④ 2급 이상의 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된 사람이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제20조의4(시험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) ① 자격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

줄일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, 시험과목,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, 시험일시·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자격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.

1.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
2. 대학에서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
3. 안전관리책임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
4. 해사안전 및 선박안전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
5. 선박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

	<u>다</u>고 <u>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</u> ④ <u>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경력증명을 위한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⑤ <u>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</u> ⑥ <u>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가 합격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.</u> ⑦ <u>그 밖에 자격시험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 실시기관이 정한다.</u>
제20조의2·제20조의3 (생략)	제20조의5·제20조의6 (현행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과 같음)
제21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~ ⑥ (생략)	제21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⑦ <u>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</u>

⑦ (생 략) 제21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해양수산부장관(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법 제46 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 설>	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 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. -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 시험의 실시 -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공고 -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-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합격 자 공고 -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자격 증 발급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 제21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신청
---	--

	<u>2.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 목 면제 대상자 확인</u> <u>3. 법 제61조의2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</u> <u>4. 법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 유의 확인</u> <u>5. 법 제61조의5에 따른 자격의 취소·정지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819